

(앞쪽)

(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)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			
성명		군번	
입영부대			
입영일시	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		
모이는 장소			
도착지			
※ 전화상담 ☎ 1588-9090⇒0번(병무민원상담)			

위의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는 통지서 수령 즉시 잘라내어 지갑 등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
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○ 이 통지서는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에 대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입니다.

○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해야 합니다. 동원령은 국방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며, 신문·방송 등 공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※ 입영일시 예시 : 만약 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

구분	다음 날	다음 날부터 ○일째 되는 날						
		②일째	③일째	④일째	⑤일째	⑥일째	⑦일째	...
입영일자	1월2일	1월3일	1월4일	1월5일	1월6일	1월7일	1월8일	...
입영시간	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							

○ 이 통지서는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, 휴대폰 등에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NO. _____ (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)
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입영구분 ☐ 개별입영 ☐ 차량수송

성명			생년월일		
주소					
계급			병과(주특기)	군번	
입영부대				소집중대	
입영일시	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				
모이는 장소					
도착지					
유효기간	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				

「병역법」 제46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.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

직인

※ 이 통지서는 입영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시해야 하며, 뒤쪽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NO.

(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)
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수령증

통지된 사람	성명				생년월일	
	주소					
	계급	병과(주특기)			군 번	
	입영 부대 입영 일시	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				

위 사람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
1. 일시 : 년 월 일 시

2. 주소 :

3. 이름 : (서명/인) 본인과의 관계()

4. 연락처 : 전화 :

(대리수령하신 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※ 위 사항은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, 예비군동대 등에서
대면교부 할 경우에 통지서 수령인이 작성해 교부하는 사
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(우편수령 시 작성 불필요)

이 휴대용 안내서는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
국가 비상사태 시 본인이 입영할 부대와 시간을
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니 지갑 등에 소지
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
페이지(www.mma.go.kr)에서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.

교부 및 독려사항

통지서 교부자	소속		성명	(서명 또는 인)
통지서 교부 여부	[]교부, [] 불능, []회송		불능· 회송 사유	

입영독려 일시	독려자 성명	면담자 성명	독려 결과
	(서명 또는 인)	(서명 또는 인)	
	(서명 또는 인)	(서명 또는 인)	

위 사항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, 예비군동대에서 지방병무(지)청으로 부터 교부를 의뢰받은 통지서의 교부 여부 및 입영 독려사항을 기록하는 란입니다.

입영 신고서

통지서 번호		성 명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	-----	-----------

이 신고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군경 및 교통기관에 대한 요망사항

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신속히 입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

- 입영할 때에는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녀야 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에 따르지 않으면 「병역법」 제88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